

#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

의안 번호	31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, 장애인 차별적용어 등 일괄정비 필요
- 일괄정비 자치법규 제정·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증진

## □ 주요내용

- 일본식 한자어 정비.....(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)  
※ 구배→경사, 구좌→제좌, 납골당→봉안당, 지득한→알게된, 부락→마을,  
불입→납입, 지참→지각 (총 11건)
-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정비.....(안 제9조)
- 성년후견 관련 자치법규 정비.....(안 제10조)
-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.....(안 제11조)

## □ 제정조례안 : 불임1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7. 12. 1. ~ 2017. 12. 21. (2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4
- 방침결정문 : 불임5

< 불임 1 >

##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

**제1조**(「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· 징수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·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배는” 을 “경사는” 으로 한다.

**제2조**(「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구좌” 를 “계좌” 로 한다.

**제3조**(「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납골당” 을 “봉안당” 으로 한다.

**제4조**(「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중 “지득한” 을 각각 “알게된” 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자연부락” 을 “마을” 로 한다.

**제5조**(「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4항 후단 중 “이자의 불입” 을 “이자의 납입” 으로 한다.

**제6조**(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이자불입” 을 “이자납입” 으로 한다.

**제7조**(「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이자의 불입방법” 을 “이자의 납입방법” 으로 한다.

**제8조**(「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후단 중 “지참” 을 각각 “지각” 으로 한다.

**제9조(「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**제10조(「안산시 통·반설치 조례」의 개정)** 안산시 통·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조례 제1969호 안산시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5조의3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**제11조(「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 중 “장애인”을 “장애인”으로 한다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예산법무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예산법무과장 전덕주
	담당팀장 직위·성명	법무규제개혁팀장 안옥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오세청 (행정 2719)